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계획 수립 기한 설정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00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계획 수립 기한 설정	2
2. 개발계획 승인 취소 의무화 등	6
3.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설정 등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3.
3. 회부연월일 :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계획 수립 기한 설정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온천우선이용권자 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

현행	개정안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 청할 수 있다.	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¹⁾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여 30,000m² 이상의 대규모 온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²⁾

1) 「온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2)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규모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지연되어 온천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에 온천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³⁾ 해당 규정을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온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3)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온천우선이용권자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포함되는데⁴⁾ 온천개발의 의지가 있어 온천이 발견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자는 토지 소유 시점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온천 개발 의지가 있음에도 온천개발을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발계획 수립 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사전 절차가 수반되므로 6개월이라는 개발계획 수립 기한은 불충분할 수 있고,⁵⁾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변경되어 개발계획 수립 의사가 있음에도 수립 기한이 지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온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5) 현행법 제10조제11항은 시장·군수의 온천개발계획 수립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6개월 내에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규정은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온천개발의지가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2. 개발계획 승인 취소 의무화 등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지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u>취소</u> 할 수 있다.	⑤ ----- ----- <u>지체 없이</u>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u>취소</u>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④ ----- ----- ----- <u>지체 없이</u> <u>취소</u> 하여야-----.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되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재량규정**이므로 개발계획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취소하지 않아 온천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2024년 9월 기준 전국 440개 온천지구(구역) 중 미개발 온천은 155개(35%)로, 온천원보호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승인되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은 37개로 전체 미개발 온천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6)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온천 미개발 현황 (24.9. 기준) 〉

(단위 : 개소)

온천발견신고 (3년 초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3년 초과)	합계
	개발계획 미수립	개발계획 수립 (2년 초과)		
43	18	37	58	155

※ 자료 : 행정안전부

특히 온천원보호지구는 30,000m² 이상의 대규모 온천개발을 전제로 인근 토지를 편입하는데 온천원보호지구에서는 온천보호를 위하여 토지 굴착이나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⁷⁾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취소를 통해 토지나 지하수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취소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온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내 토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을 막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7) 「온천법」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개발계획의 취소 사유에는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 등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개발계획의 취소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발계획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개발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할 수 있도록 현행법대로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둘째, 30,000㎡ 미만의 온천개발을 전제로 하는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의 개발계획 또는 승인 취소 요건과 유사하게 온천원이 고갈되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규정하면서도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승인 취소는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발계획의 취소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취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장기 미개발 온천이 정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및 승인 취소를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미개발 온천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실무적으로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 외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온천개발계획 실적평가제¹⁰⁾를 도

8)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개발계획 취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온천법」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⑧ 시·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입하여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천원보호지구의 개발잠재력, 사업 현실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 미개발 온천을 정비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설정 등

개정안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를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3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는 시장·군수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신설></u>	④ 제4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권리 말소 부칙</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 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 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우선이 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용자·알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¹¹⁾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11) 「온천법」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온천우선권자의 온천개발이 지체됨에 따라 미개발 온천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또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 굴착이나 온천 이용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나 온천보호구역 지정 취소, 온천개발계획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만 만료되는 경우 오히려 온천 개발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가 만료되는 경우 제3자가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

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부재하게 되므로 온천 이용 방안이 제한되거나,¹²⁾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법령¹³⁾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

12)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13)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법 시행령」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참고

온천개발절차

1. 온천징 후조사·굴착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법 제12조)에 따라 굴착

- 온천자원부존에 대한 조사결과서 첨부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2.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견신고공에 대한 온천의 적격여부 검사

- 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기준 등

○ 온천개발·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수리

신고수리 기준

- 용출 온도 25℃이상, 성분기준 충족
-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

○ 온천발견신고 수리제한 및 반려사항 참고

- 기존 온천공과 1천미터 이내, 농업진흥지역 등

○ 수리후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이내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 이행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 1/2 초과

- 소규모 온천 개발에 관한 계획
- 예정구역안의 토지 조사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인근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에 대한 의견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 기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계와 중첩지정 곤란

또는

3-2.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도지사)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1~2개 이상의 보조공 추가확보로 온천부존지역, 1일 적정양수량 산정 등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 및 타당성 분석

- 온천원보호지구중 1일 적정 양수량에 의한 개발면적 및 범위 판단
- 적정 개발면적(온천수 1톤당 66.2 ㎡)

○ 온천개발계획승인시 개별법령에 의한 검토 의제 처리.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주변여건, 수요전망 및 개발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승인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 개발계획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

